

#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 :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2. 신청기한 : **2021.04.20(화) 17시까지**
3. 신청방법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angmyu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for scholarship applications. It includes sections for selecting the scholarship type, viewing application forms, and uploading submission documents. A summary table at the bottom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pplication status.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장학정보 -> 장학신청 화면에서 장학금 선택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입력 및 저장)

나. 해당 증빙서류(스캔하여 업로드)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5. 모든 신청자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입력(최신화) 함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기본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확인 또는 수정 ->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

## 6. 신청장학금

장학금명	세 부 내 용		지급기간	장학금액
국가보훈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 ※ 지원기간 : 8개 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8개 학기	국고50% 교비50%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출 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보호 대상자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졸업까지	교비100%
	성적 기준	-		
	제출 서류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선발 기준	교육보호대상자 등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기간 : 6년 범위 8개 학기	8개 학기	국고50% 교비50%
	성적 기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출 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선발 기준	- 우리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연한 이내)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에 재학 중인 학부생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각 1부(형제·자매)		
나눔(기초)	선발 기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해당학기	등록금의 30%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눔(장애)	선발 기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		
사회봉사	선발 기준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1회 이상 행사참가실적이 있는 자	해당학기	80만원

장학금명	세 부 내 용	지급기간	장학금액
	<정치 , 종교 , 영리단체 ,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 농촌봉사활동 제외> ※ 봉사기간 : 2020학년도 2학기](2020. 9. 1 ~ 2021. 2.28)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		
동문자녀	선발 기준 부 또는 모 중 1인이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자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 중 1회만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누락 (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증명서 (부 또는 모)		
다문화	선발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허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다자녀	선발 기준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향상	선발 기준 - 비교학기(직직전학기 :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1.5 이상 향상된 학생을 일괄심사하여 선발 -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 및 재이수등으로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제외 (직직전학기가 학사경고인 학생 제외)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만 신청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제출 서류 -		

## 7. 유의사항

- 가.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가 등록 후 학적변동(휴학 등)되어 이월등록(복학 등) 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 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가성, 포상성 제외).
- 다.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우리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처리

합니다(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2. 삭제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라. 모든 제출 서류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없음).

마. 신청 장학금은 개별 심사 후 4월 말 이후 지급 예정

바. 국가고시 합격자(1차 포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폐지 되었으나,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지급(학생복지팀 방문)

사. 면학B 장학금 추가선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최종 확정 이후 5월경 선발 예정

아.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02-2287-5016)

2021. 3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